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 ㈜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60% 이하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상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투자비용	<table><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th><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보수</th><th>판매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h>총 보수 · 비용</th><th>1년</th><th>2년</th><th>3년</th><th>5년</th><th>10년</th></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td><td>-</td><td>1.26</td><td>0.7</td><td>-</td><td>1.27</td><td>130</td><td>266</td><td>409</td><td>714</td><td>1587</td></tr><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td><td>-</td><td>0.77</td><td>0.21</td><td>-</td><td>0.78</td><td>79</td><td>163</td><td>251</td><td>438</td><td>974</td></tr></table>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 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	1.26	0.7	-	1.27	130	266	409	714	15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	0.77	0.21	-	0.78	79	163	251	438	974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	1.26	0.7	-	1.27	130	266	409	714	15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	0.77	0.21	-	0.78	79	163	251	438	974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5.08.01~ 26.07.31	최근 2년 24.08.01~ 26.07.31	최근 3년 23.08.01~ 26.07.31	최근 5년 21.08.01~ 26.07.31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 공제(C)	2014.03.17	62.93	34.95	24.54	8.69	8.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 제(C-e)		63.68	35.59	25.13	9.22	8.96			
	투자신탁		64.87	36.60	26.07	10.06	9.79			
	비교지수		61.72	38.16	28.92	14.99	12.04			
	수익률 변동성		24.03	20.42	18.77	17.77	16.59			
(주1) 비교지수 : KOSPI 50% + MSCI AC World Index 50%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MSCI 지수 :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 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6.07.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주식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예리	1993	선임매니저	-	-	-	-	60.01	34.96	0년7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 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 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특정통화에 집중되어 투자 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해당 특정통화)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C, C-e]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 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 징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5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증권(주식형)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코어밸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증권(혼합주식형)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소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글로벌벨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벨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2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